

제291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20. 2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 경 부위원장님,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**

- 2020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.

□ **관련 법규는**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와
- 교육감의 교육·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“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입니다.

□ **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**

-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교가 연기된 서울청림유치원 1개원을 4월 1일자로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**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**